

동경월드일본어학교 납부금반환규정

(목적)

제 1 조 이 규정은 동경월드일본어학교 학칙 제 24 조에 규정하는 생도납부금반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(정의)

제 2 조 생도납부금은 입학선고료, 입학금, 수업료, 시설비를 말한다.

(대상자)

제 3 조 본 규정은 본교에 재적중의 생도 및 입학예정자 생도를 대상으로 한다.

(반환)

제 4 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생도가 입학하지 않은 경우,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입학허가서의 반환이 확인된 후, 수업료, 시설료에 대해서 반환한다.

2 생도가 입학한 경우, 6 개월분의 생도납부금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.

3 12 개월납부로 생도납부금을 납부한 학생이 중도퇴학하는 경우, 재적기간이 6 개월 이하일 때는 수업료 6 개월분을 반환한다. 재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는다.

4 입학후, 계속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업료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시작전날까지 중도퇴학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한다.

(중도퇴학)

제 5 조 퇴학하려는 생도는 그 이유를 기재한 퇴학신청서 (소정양식) 를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퇴학신청서의 제출과 수리가 입학후 6 개월을 넘은 때에는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. 또한 생도 학칙위반, 출석불량 등에 의한 퇴학처분시에는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.

(반환절차)

제 6 조 반환절차는, 퇴학사유 별로 확인을 한 후에 진행한다.

(1) 생도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류카드 실효후 반환한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.

(2) 생도가 취직한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을 확인한 후에 진행한다.

(3) 생도가 진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확인한 후에 진행한다.

(4) 그외 사유로 인해 중도퇴학하는 경우에는 퇴학전의 재류자격 실효를 확인한 후에 진행한다.

(지불)

제 7 조 반환은 생도의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.

2 반환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생도부담으로 한다.

(그 외)

제 8 조 본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협의한다.

부칙 이 규정은 202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